

1. ○○확포장공사 하도급 관련

상담요청

설계내역상 철거공사가 별도 공종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한 후, 발주처가 뒤늦게 철거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벌점 부과를 예고한 경우 법적 대응 방안

□ 상담내용

○ 철거공사의 계약 범위

- 발주처 제공 설계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철거공사가 별도 독립 공종으로 편성되지 않고, 본 공정의 세부 공정으로 편성(본공정에 수반된 작업으로 이해)되어, 계약 당시 철거공사를 독립된 전문공사로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사 수행 및 정산 경과

- 철거공사는 시공계획서 제출, 감리 확인, 검측 및 기성검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공사대금도 지급되었습니다. 공사 중 확인된 일부 중복 물량은 변경 계약과 최종 정산을 통해 이미 조정되어 중복 지급이나 부당이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주처 별점 부과의 적정성

- 발주처 담당자 변경 이후 기존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항을 근거로 별점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에도 별점을 부과하려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 설계도서와 계약 내용, 공사 수행 및 정산 경과를 종합하면 철거 공사는 하도급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발주처의 별점 부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내역, 계약서, 시방서, 감리·기성검사 자료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별점이 실제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사 탈퇴 관련

상담요청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 탈퇴하는 경우, 탈퇴 구성사의 기성금을 발주처가 공탁한 상황에서 공탁금 회수 방법,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대응, 시공위임협약서의 효력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 상담내용

○ 공탁금 회수 및 채권양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탈퇴 구성사로부터 기성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으면 공탁금 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인과의 계약 또는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에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등으로 발주처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 압류 대응

- 채권양도 통지가 국세청 등의 압류보다 먼저 발주처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후 이루어진 압류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압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위임협약서의 효력

- 시공위임협약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내부 약정으로, 발주처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서를 근거로 발주처에 공탁금을 부금율만큼만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내부 정산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시공위임협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협약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를 하거나 발주처를 오인 시키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론

- 탈퇴 구성사의 기성금 전액에 대해 적법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에 신속히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또한 국세 압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공위임협약서는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자료로 활용하되 발주처에 대한 권리 주장에는 채권양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하도급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및 원청의 노무비 직접지급 가능여부

상담요청

하도급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원청의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의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및 직접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지시·공모하지 않고 사후에 처음 인지하였다면, 불법 재하도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하도급 금지 의무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등록 재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업체가 임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하도급업체도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청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제 시공분의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다룰 수 있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노무비는 원청이 임의로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니,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직접지급 합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법정 직적집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귀사는 채권자 대위원 행사 가능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합니다.

○ 결론

-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에 인지하였다면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은 낮으나, 임금체불이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실제 기성고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신고·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는 임의 직접지급보다는 당사자 간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집행권원에 따른 지급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